

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

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박용선 의원 외 10명)

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용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16.
발 의 자: 박용선·이선희·김대진
최병근·김창혁·박성만
이춘우·강만수·최병준
이형식·김진엽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- 해양생명자원은 해양환경에 적응해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생물학적·유전적 다양성을 보유해 미래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음.
-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 및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서 식량, 의약, 에너지 및 환경 등 바이오 모든 분야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, 현재 해양바이오산업은 약 1% 정도만 개발되었고 연간 10%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임.
- 2020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규모는 6조8천억원 규모이고 2027년에는 약11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, 국내 해양바이오

오산업 규모는 6,405억원('20)으로 연평균 7.6% 성장하였으며, 2027년에는 약1조600억원~1조6,000억원의 성장이 예상됨.

-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양바이오 분야 기술선점 및 시장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경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정부 국정과제*에도 반영되어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.

* 국정과제 73 「풍요로운 어촌, 활기찬 해양」,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

- 따라서,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종합적인·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나.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(안 제7조)
- 다.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라.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

다.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

5. 관련부서 협의

가. 법제심사: 검토 완료

- 예산입법담당관(예산입법담당관-138, '24. 2. 1.)

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
- 감사관(정책기획관-1946, '24. 2. 15.)

다. 규제 검토의견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(정책기획관-1946, '24. 2. 15.)

라. 해당부서 검토의견: 해당없음

- 동해안정책과(정책기획관-1946, '24. 2. 15.)

마.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해양바이오산업”이란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(이하 “해양수산생명자원”이라 한다)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

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국내외 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
3.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4.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
5.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
6.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7.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8.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·개발 및 사업화 지원
2.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
3.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

4. 창업 및 사업화 지원
5.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
6.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
7. 세미나,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
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
5. 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

2.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3. 학계, 언론계, 기업체,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서기관이 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예산지원)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

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대학교, 기업, 기초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)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 및 법인에게 「경상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2. (생략)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~ 자. (생략)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~ 7.(이하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
2.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·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
3.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
4.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

□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·보전과 개발·이용을 조화롭게 하고,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

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행정·재정적 지원(안 제4조 2항)

-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.

나.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(안 제7조)

-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확보, 창업 및 사업화 지원, 국내 외 행사의 개최 등
(안 제7조 제1호~8호)

다.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

-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정책방향 설정, 기본계획, 기반조성 및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
(안 제7조제1호~3호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본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. 추후 시행계획 수립시 예산부서 재정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

4. 작성자

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락산업국 동해안정책과 지방행정주사 한상식(054-880-7627)



경 상 북 도



수신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(동해안정책과장)

(경유)

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(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1. 동해안정책과-885(2024. 2.24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,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조례(규칙)명	검토의견
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, 행정·재정적 지원,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추정되나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,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. ◦ 다만, 해당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,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끝.

경 상 북 도 지 사

관인생략

★주무관 **권오순** 예산총괄팀장 **류가** 예산담당관 **윤희만** 전결 2024. 2. 14.
협조자
시행 예산담당관-2195 (2024. 2. 14.) 접수 동해안정책과-899 (2024. 2. 14.)
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경북도청 / <http://www.gb.go.kr>
전화번호 054-880-2153 팩스번호 054-880-2189 / jovi27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2025 APEC 정상회의" 경주가 최적지입니다.